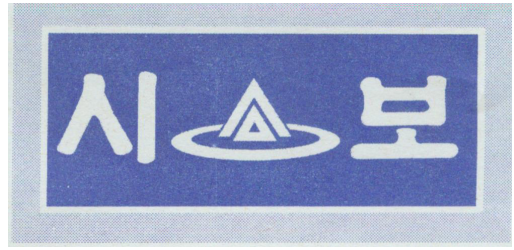


공 주 시



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관의 장

제469호 2012. 9. 7.(금)

【훈 령】

제202호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1

회 람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

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

2012년 9월 7일

공주시 훈령 제 202 호

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상하수도검침, 상하수도세입보조 및 요금상담, 진료보조”를 “상하수도검침, 진료보조”로, “단순잡역조무”를 “단순조무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209명”을 “204명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중 “행정지원실장”을 “인사업무부서의 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표 (제7조 관련)

1. 무기계약근로자 정수(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제외)

(단위: 명)

직종별 부서별	계	단순노무										도 보수원	환 경 미 회 원	비 고
		소계	시설물· 장비유지 관리인부	현장공사 ·작업인부 현업인부	환경지도 ·조사 ·감시 ·현장인부	상하수도 검침원	진료 보조원	의류 관리사	통역원	단순노무 인부	도 보수원			
총 계	168	79	11	8	2	13	16	1	5	23	11	78		
소계(본청)	133	44	5	8	2	13	1	1	5	10	11	78		
시정담당관	2	2							1	1			시장부속실 1, 통역1	
기획담당관	1	1								1			부시장부속실 1	
인사담당관	1	1								1			기록물관리 1	
사회과	1	1					1						의료급여관리 1	
복지과	3	3											화장시설운영관리 3	
회계과	3	3								3			청사환경정비 3	
관광과	4	4							4				통역 4	
건설과	13	2		2							11		가로등수리 2, 도로보수원 11	
교통과	2	2			2								주정차단속 2	
환경과	1	1								1			환경개선부담금 보조 1	
청소과	79	1								1		78	환경미화원 78, 재활용품수거운반 1	
수도과	21	2	2	6		13							시설관리 2, 누수수리 4, 상하수도준설 2, 상하수도검침 12	
토지과	2	2								2			상하수도세입보조및요금상납 1	
의회사무국	2	2								2			세주소사업보조 1, 개별공시지가업무보조 1	
소계(직속기관)	25	4					16			5			의원사무실 1, 의장부속실 1	
보건소	17	17					16			1			한방진료보조 7, 예방접종 2, 치위생사 2, 건강생활실천사업 1, 이동목욕사업 1, 금연상담지도 1, 물리치료 1, 임산부영유아관리보조 1, 방문민원안내 1	
농업기술센터	8	8	4							4			청사환경정비 1, 농기계수리 4, 토양검정실 1, 가축질병진단실 1, 조직배양실 1	
소계(사업소)	8	8	2							6				
관광경영연구소	4	4	2							2			공산성관리 1, 고분군관리 1, 매표및안내 2,	
도서관	1	1								1			청사환경정비 1	
증합사회복지관	3	3								3			구내식당영양사 1, 구내식당조리보조 1, 복지프로그램운영보조 1	

2. 청원경찰의 정수(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)

(단위: 명)

부서별	계	경비 청원 경찰	단속감시 청원경찰						청원 산림 보호 직원
			소 계	지방금 하천감시	공원지 감 시	주정차 일단속	과적차량 단 속	문화재 보호감시	
총 계	36	16	18	11	1	2	2	2	2
소계(본청)	27	9	16	11	1	2	2		2
회 계 과	3	3							
건 설 과	2		2						
산 립 과	2								
도 시 과	1		1		1				
교 통 과	2		2			2			
수 도 과	4	4							
재난관리과	13	2	11	11					
소계(사업소)	9	7	2				2		
공공시설 관 리 소	2	2							
관 광 경 영 사 업 소	6	4	2				2		
종 합 사 회 복 지 관	1	1							

【별지 제1호 서식】 (제6조제1항 관련)

정수책정요구서				
직 종				
근무내용				
채용필요성				
요구인원				
연 간	사 무 명	사무처리 총소요일수	1일 평균 처리시간	처리기간 (연간근무일수)
사 무 량				
보수지급기준 (단가, 수당 등)	구 분	소요액	산 출 근 거	
	보 수			
	수 당			
근무시간				
<p>「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」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책정을 요구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○○ 실·과장 ○○○ (인)</p> <p>인사담당관 귀하</p>				

[비고] 사무처리 총소요일수는 처리시간 ÷ 8근무시간 × 처리기간을 말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직종의 구분) ① 제3조제1호의 근로자는 시설물·장비유지관리, 현장공사·작업, 현장지도단속·감시, <u>상하수도검침, 상하수도세입보조 및 요금상담, 진료보조, 의료급여관리, 통역, 단순잡역조무, 도로보수원, 환경미화원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분된다.</u>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7조(정수의 총수) 공주시의 무기계약 근로자 정수는 <u>209명</u>으로 하며, 사용자별 직종별 정수책정내역은 별표와 같다.</p>	<p>제4조(직종의 구분) ① ----- ----- ----- <u>상하</u> <u>수도검침, 진료보조</u> ----- ----- -- <u>단순조무,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정수의 총수) ----- ----- <u>204명</u> ----- ----- -----.</p>